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4도14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
용협박)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검사
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. 8. 22. 선고 2024노291 판결
판 결 선 고 2025. 6. 12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2023. 7. 11.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성폭력처벌법'이라 한다)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, 이하 '촬영물 등'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

대법관 신숙희 _____

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